경운대학교 연구위원회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항에 의하여 위촉한다.
 - ①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 된다.
 - ②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제4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
 - 2. 교내 외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간접연구경비의 징수, 지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각종 연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6조(수당)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.
- 제7조(보칙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제8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업무는 산학연구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